

의안번호	2217101
의 퇴 인	강선영의원
회 답 일	2026.10.13.
추 계 번호	26D11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7억 8,800만원, 2032년 29억 6,700만원 등 추계기간 총 178억 3,700만원(연평균 30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안 제12조제4항 및 안 제79조제1항)	2,788	3,013	3,078	3,230	2,967	15,076	3,0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체등급의 판정 등) 신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제4항) 국가는 제4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2	안 제79조제1항 (여비 등의 국고부담)	안 제12조제4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체등급의 판정 등) 신설	○	-
2	안 제79조제1항 (여비 등의 국고부담)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심리 상담 또는 치료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치료대상자 수는 추계기간 중 19세가 되는 남성인구에 최근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소관 7급 판정을 받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치료단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¹⁾을 활용하여, 의원급에서 진찰료, 상담료, 약제비를 지원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부담금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²⁾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1)

2) 소비자물가상승률(2026. 7.)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심리상태로 인해 7급판정을 받은 경우 치료비 지원(안 제12조제4항 및 안 제79조제1항)

- (지원대상) 추계기간 병역판정검사대상 예측인원에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대상 인원 대비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최근 5년간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병역판정 처분 및 7급 판정 현황

(단위: 명, %)

구분	병역판정 처분인원	7급 판정자 (병역처분인원 대비 비율)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외	
2021	254,361	6,475	(2.5)	4,283	(66.1)	2,192	(33.9)
2022	248,361	6,913	(2.8)	5,087	(73.6)	1,826	(26.4)
2023	238,604	6,387	(2.7)	4,673	(73.2)	1,714	(26.8)
2024	221,604	6,876	(3.1)	5,362	(78.0)	1,514	(22.0)
2025	222,425	7,312	(3.3)	5,632	(77.0)	1,680	(23.0)
평균	237,071	6,793	(2.9)	5,007	(73.7)	1,785	(26.3)

자료: 병무청

- 연령별 남성 주민등록인구에 최근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하여 7급 판정을 받은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지원대상자 수를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 지원대상자 수 추정

(단위: 명)

	2028	2029	2030	2031	2032
병역판정검사대상	230,358	244,010	244,355	251,455	226,388
7급 판정자	6,600	6,991	7,001	7,205	6,487
7급 판정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4,865	5,154	5,161	5,311	4,7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2026년 1월 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³⁾에 따라 의원급에서 진찰료, 상담료, 약제비를 지원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부담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치료지원기간은 1년, 진료횟수는 첫 3개월은 주1회, 그 후 3개월은 2주에 1회, 그 후 6개월은 월 1회로 가정하여 1년간 26회의 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지원단가(2026)

(단위: 원, 회)

	초진	재진	횟수	지원금액
진찰료	5,650	4,010	26	105,900
상담료	5,230	3,200	26	85,230
약제비	30,000		12	360,000
합계	-	-	-	551,130

주: 1.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26.1.)의 각 항목별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에 고시된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2. 진료횟수는 첫 3개월은 주 1회, 그 후 3개월은 2주 1회, 그 후 6개월은 월 1회로 가정하여, 초진을 포함한 총 진료횟수이며, 약제비는 월 1회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지원단가 추정

(단위: 명)

	2028	2029	2030	2031	2032
심리치료 지원단가	573,171	584,634	596,327	608,254	620,4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연도별 지원대상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7급 판정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시 추가재정소요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치료비 지원 대상(명)	4,865	5,154	5,161	5,311	4,782	
심리치료 지원단가(원)	573,171	584,634	596,327	608,254	620,419	
추가재정소요(백만원)	2,788	3,013	3,078	3,230	2,967	15,0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26.1.)의 의원급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7억 8,800만원, 2032년 29억 6,700만원 등 추계기간 총 178억 3,700만원(연평균 30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안 제12조제4항 및 안 제79조제1항)	2,788	3,013	3,078	3,230	2,967	15,076	3,0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대상 인원 대비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과 2026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의원급에서 진찰료, 상담료, 약제비를 지원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부담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